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 전담재판부 소송절차 안내

2020. 1. 6. 개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식재산 전담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사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소송절차상 주의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소송당사자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셔서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I. 소의 제기

1. 사건명의 기재

가. 착오 배당에 의한 절차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건명에 지식재산권 사건임을 명확히 밝힌다.

나. 사건명에는 '침해된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당사자가 구하는 구제방법'을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지식재산권 또는 구제방법이 여러 개일 경우 '등'을 사용한다.

[예시] 특허권 침해금지, 디자인권 등 침해금지, 상표권 침해금지 등,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2. 외국어 변론 신청(국제사건)

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당사자는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62조의2). 다만, 현재는 '영어' 변론에 한정된다.

나. 신청에 대한 허가 요건은 아래와 같다.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일 것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소만을 의미함
 -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소는 해당되지 않음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
-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다.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는 원칙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신청 및 동의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어 변론을 허가할 수 있다.

라. 외국어 변론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외국어 변론 신청서」(첨부 1)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서 부분과 함께 「의견서」 양식(첨부 2)을 송달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양식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외국어 변론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마. 법원이 외국어 변론을 허용한 사건(이하 '국제사건'이라 한다)의 절차 진행상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재판장은 국제사건 소송의 지휘에 국어를 사용한다.
- 외국어 변론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정에서 허가된 외국어로 변론할 수 있다.
- 법원은 변론기일에 재판부의 말과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의 말(증인신문 포함)에 대하여 법원의 비용으로 통역을 제공한다.



- 통역인이 허가된 외국어를 국어로, 국어를 허가된 외국어로 통역하는 경우에는 동시통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차통역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준비서면, 서증)에는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저히 필요한 경우 번역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결정서·명령서는 국어로 작성되나, 당사자에게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할 수 있다.
- 판결서는 국어로 작성되어 선고되고, 판결서正本 송달 후 당사자에게 판결서에 대한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한다.
- 당사자는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바. 국제사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의한다.

사. 재판부는 국제사건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한다.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절차 협의를 위한 화상회의(video conference), 외국인 전문가의 전문심리위원 위촉, 비디오 등 증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및 감정인신문(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339조의3) 등 국제사건의 특성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심리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3. 관련 사건의 적시

해당 사건에 관련된 다른 사건(특허심판원의 심판,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 가처분 사건, 별도의 민사 본안 사건, 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 사건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원고는 소장에 이를 적시하고 사건번호 및 현재 진행 상황을 밝혀야 한다.



4. 사건관리를 위한 화상회의

가.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양쪽 당사자와 영상·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하 '사건관리 화상회의')으로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재판장은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위 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나. 사건관리 화상회의에서는 아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 변론기일 일자 및 횟수, 각 기일별 진행사항
-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종합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전문가진술서 제출기간,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및 분량 포함)
- 검증·감정이나 전문가증인 등 시일을 요하는 증거의 신청 여부 및 기간
- 전문심리위원 지정 여부
- 기술설명기일 실시 여부
- 침해 여부, 무효 여부, 손해배상액 산정 등 쟁점별로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관련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소송절차의 진행 방식
- 조정절차 회부 여부
- 쟁점의 확인 및 정리

II. 침해의 주장

1. 명확한 청구취지 및 별지의 작성

가. 불명확한 청구취지는 소송 지연의 원인이자 각하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설령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 원고는 이 점을 유념하여, 금지청구의 대상을 별지로 특정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별도의 판단 없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침해금지의 대상을 구체적·개별적·사실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은 기재는 무의미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권리 내용을 별지에 그대로 기재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원고의 상표·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기타’, ‘등’, ‘일체’, ‘관련된’과 같은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물건에 대하여 생산, 판매, 양도 등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실제로 생산·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제품명, 제품 사진(도면), 제품 번호, 제품 설명 등을 통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의 대상을 어려움 없이 식별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다. 소장 제출 단계에서 침해금지 대상을 충분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한다.

2. 청구원인의 특정

가. 원고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장에서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아래 사항을 특별히 유의한다.

- 특허권(실용신안권): 특허청구범위가 복수의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항을 명확히 특정한다.
- 상표권: 등록상표별로 침해를 주장하는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까지 명확히 특정한다.
-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카)목 중 어느 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것인지 명확히 특정한다.
- 저작권: 단순히 ‘저작권재산권이 침해되었다’라고 기재하는 대신 저작권 중 침해된 저작권재산권의 종류(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 나. 금지청구의 경우 지식재산권 별로 근거 조문을 명확히 한다(특허법 제126조,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상표법 제107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저작권법 제123조 등).
- 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 별로 근거 조문을 명확히 한다(특허법 제128조, 상표법 제109조,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등). 특히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관한 특별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는 적용을 구하는 손해액 산정 근거 규정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 라.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바(특허법 제128조 제8항, 실용신안법 제30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당사자가 위 규정의 적용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취지를 명확히 한다. 다만, 위 조항들은 2019. 7. 9.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됨을 유의한다.

3. 침해 주장시 유의사항

- 가. 원고는 지식재산권의 권리 내용 및 자신이 지식재산권의 보유자라는 점을 밝히는 서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특허청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등록공보와 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영업비밀: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 저작재산권: 자신이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라는 점 또는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서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자신이 지식재산권의 단독보유자인지, 공동보유자인지, 전용실시권자(전용사용권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침해를 명확히 주장하여야 한다.

- 침해된 특허발명이 물건의 발명인지, 방법의 발명인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지 명확히 한다.
- 주장하는 특허침해의 유형(문언침해, 균등침해, 간접침해 등)을 명확히 밝힌다.
-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이에 대응하는 침해 제품의 구성을 대비표 등을 활용하여 구성요소별로 상세히 대비하여야 한다.

라. 디자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양 디자인의 동일·유사성을 대비표 등을 활용하여 상세히 대비하여야 한다.

Ⅲ. 피고의 답변

1. 침해 주장에 대한 명확한 답변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의 기본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청구취지의 불특정을 문제삼는 경우

- 청구취지 내지 별지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다.
- 별지 기재 제품과 피고가 실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다르다.
- 기타

② 원고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지를 다투는 경우

- 원고는 지식재산권자(또는 금지청구권자)가 아니다.
- 원고의 상품표지는 주지·저명하지 않다.
- 원고의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원고의 저작물은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 기타

③ 침해를 부인하는 경우

- 피고는 원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 원고의 상표(디자인, 영업표지)와 피고의 사용 표장(제품디자인, 영업표지)은 동일 내지 유사하지 않다.
-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 현재 피고는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였다.
- 기타

④ 일응 침해행위로 보이거나 항변 사항이 있는 경우

- 원고의 권리는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기초한 권리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권리남용 항변).
- 피고의 제품은 자유실시기술(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 기타

2.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피고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특허법 제 126조의2).

나. 법원은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규정은 2019. 7. 9. 이후 접수된 특허권 침해사건에 적용한다.

IV.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의 진행

1. 기술설명기일

- 가. 재판부는 기술의 내용을 명확하고도 집약적으로 파악하고 쟁점을 정리하기 위하여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을 기술설명기일로 진행할 수 있다.
- 나. 기술설명기일에 당사자는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 실제 제품의 지참 및 시연 등을 통하여 사건과 관련된 기술의 내용을 명확하고도 간결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기술조사관은 기술설명기일에 참석하여 당사자의 기술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있고, 재판장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기술 내용 중 특정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설명기일이 끝난 후 당사자의 기술설명 내용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

2. 전문가증인

- 가. 당사자는 특정 기술분야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은 사람을 전문가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증인 기본사항 확인서」(첨부 3)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재판부는 전문가증인의 신문을 위해 필요한 사항(전문가증인 진술서 및 증인신문사항의 제출기간, 증인신문시간의 제한, 전문가증인이 한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 등)에 관해 변론준비명령을 내릴 수 있다.
- 다. 주신문은 전문가증인 진술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주신문에서 전문



가증인에게 제시하거나 인용하는 모든 자료는 전문가증인 진술서 및 증인신문사항의 제출기간 전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한다.

라. 전문가증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사자는 각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위한 통역인을 대동할 수 있다(다만, 국제사건에서 전문가증인이 허가된 외국어로 증언하는 경우에는 통역인을 대동할 필요가 없다). 통역인을 대동하는 경우 원활한 통역을 위해 당사자는 사전에 통역인에게 기술적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통역인을 대동하지 못하는 경우 증인신문기일 4주 전까지 재판부에 이를 알리고 통역인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의 허용범위 내에서 전문가증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원격영상신문의 방식으로 신문할 수 있다.

3. 전문심리위원

가. 법원은 지식재산권 사건의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1항).

나. 전문심리위원은 지식재산권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2항, 제3항).

V. 증명에 관한 법원의 명령

1. 자료(서류) 제출명령



- 가. 법원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서류(이하 '자료'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32조, 디자인보호법 제118조, 상표법 제114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3).
- 나. 자료 제출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 등을 포함하여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다. 상대방 당사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 라. 법원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그로 인해 신청인이 받은 불이익과 자료의 공개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을 따져서 제출 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출 대상 자료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침해의 증명, 손해액의 계산과 관계없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부분을 삭제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마.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손해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다.

2. 저작권 침해 관련 정보제공명령

- 가. 법원은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심리 단계 및 증명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나 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9조의2).
- 나. 상대방이 정보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 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기록 열람 제한 제도(민사소송법 제163조)와는 별도로, 법원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이 공개될 우려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공개 금지 등 비밀유지명령을 결정으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224조의3, 실용신안법 제44조, 디자인보호법 제217조, 상표법 제227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4, 저작권법 제129조의3).
- 나. 비밀유지명령은 본안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별도의 사건으로 신청한다. 신청시 비밀유지명령의 수명자(법인의 대표자나 소송대리인 등) 및 비밀유지의 대상을 별지 등을 활용하여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 다. 비밀유지명령의 수명자는 비밀유지명령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특허법 제229조의2, 실용신안법 제49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224조, 상표법 제231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4,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첨부 1]

외국어 변론 신청서

○ 사건번호 :

○ 제출자 :

○ 외국어 변론 허가신청 사유(체크)

- ☐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 ☐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

○ 위 해당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허가신청 외국어 : 영어¹⁾

20 . ○. ○.

원고/피고 ○○○

1) 현재로서는 허가되는 외국어가 '영어'로 한정됩니다.



[첨부 2]

외국어 변론 신청에 대한 의견서

○ 사건번호 :

○ 제출자 :

○ 외국어 변론 신청에 대한 의견

☐ 동의

☐ 부동의

○ 부동의시 그에 대한 구체적 이유

20 . ○. ○.
원고/피고 ○○○



[첨부 3]

전문가증인 기본사항 확인서

○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 객관성

1	원·피고(회사인 경우 대표이사 및 임직원, 이하 같음)와 친인척 관계에 있습니까	예	아니오
2	원·피고와 채권·채무관계에 있습니까	예	아니오
3	원·피고와 업무를 같이 하거나, 계약관계·고용관계 기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4	원·피고가 관여한 소송 또는 이 사건 특허/제품 등에 관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바 있습니까	예	아니오
5	본건 소송과 관련하여 원·피고에게 자문을 한 바 있습니까	예	아니오

위 질문 중 (예)라고 답한 질문에 관해서는, 아래에 구체적인 사정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계속)



○ 전문성

1. 증인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오.
2. 전문 분야에 관하여 ① 현재 및 과거의 직업(재직기간, 직위/직책, 담당업무 포함)을 밝히고, ② 학위/자격증, 논문/보고서, 기타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 가능)

※ 전문가증인은 당사자 일방에 편향되지 않게 사실과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 전문가증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해당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는 사실·이론에 기초하여 진술하여야 하며, 자신의 주관적인 이론·해석에 기초하여 진술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진술합니다.

일자 20 . . .

서명 _____